



이동찬 변호사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T 비자

T 비자는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에게 단기체류신분을 허락해 그들을 구제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T 비자를 받게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있다.

먼저 T 비자를 받으면 4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 혜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T 비자 신청자가 21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T 비자 신청자가 21세 미만이라면 배우자, 자녀,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들도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인신매매 때문에 가족들에게 위협이 있다면 부모,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들,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T 비자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T 비자는 혹독한 인신매매의 생존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혹독한 인신매매는 성매매 대상이 18세 미만이거나 폭력, 사기,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거나 노예처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매매가 폭력, 사기, 강제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라고 법은 정의한다. 둘째, T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벌써 체류하고 있거나 인신매매로 국경까지 왔을 때 T 비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인신매매 사건 이후 미국을 떠난적이 없어야 T 비자가 가능하다. 셋째, T 비자 신청자가 18세 이상이라면 인신매매와 관련 법집행기관의 수사와 공소에 합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에서 추방이 되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T 비자 신청자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피해, 추방되면 인신매매 범죄자들로 인해서 다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 등을 이민국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T 비자를 신청하면 다른 비자와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첫째, T 비자 신청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법집행기관의 협조요구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법집행기관의 협조요구가 합당하더라도 정신적인 또는 육체

적인 트라우마가 있어 협조를 못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를 못하더라도 T 비자는 받을 수 있다.

둘째, T 비자는 꼭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T 비자 신청자가 증명서를 신청했지만 법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증명서 발행을 거절하는 경우 법집행기관에 협조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집행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법집행기관에 전화했던 기록, 법집행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증명서류가 될 수 있다. 만약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인들이 체포되거나 법원에 기소되거나 공판이 있었다면 경찰보고서, 법원서류, 신문기사, 공판기록 등 또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먼저 언급했듯이 인신매매 당시 T 비자 신청자가 18세 미만이었다면 법집행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셋째, T 비자를 신청할 때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기록과 이민법 위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T 비자 신청자는 인신매매로 인하여 성매매 범죄기록, 이민사

기, 체류위반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T 비자와 면제를 함께 신청하면 T 비자 신분을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된다.

넷째, T 비자 신청자는 정부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T 비자 신청자는 보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어 T 비자 신청비 또한 면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미국에서 인신매매를 벗어나고 적응을 하기 위해 재정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T 비자 신청자는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메디칼, 직업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T 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전에도 정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APC.)
www.isaacleelaw.com
상담예약 (213) 291-9980